

#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1,182,395	13,535,472
일반회계	421,988,773	12,659,663
특별회계	29,193,622	875,809
공기업특별회계	11,402,011	342,06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402,011	342,060
기타특별회계	17,791,611	533,74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235,446	97,063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880,540	56,416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025	31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308,560	69,257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7,205,954	216,17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160,086	94,803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0년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39,89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